

발행번호 : 7308-0002

지 급 보 증 서

(특정채무보증용)

수입
인지

x(1902121-003147126

2019 년 01 월 08일

보증처 : 루이비통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 재화구매자들

보증인 (주) 한국 씨티은행 중앙기업입부센터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증합니다.

보증금액	금 일십이억원 정	
보증기일	2019 01 02 년 월 일부부터	2019 12 31 년 월 일까지
피보증 채무의 내용	채무자	명칭 : 루이비통코리아 (유) (102-81-29113)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15층 (
	채무종류	루이비통코리아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루이비통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전자상거래에 있어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재화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금환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매자인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구매자의 결제대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청구한 구매자에게 보상한다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에게 다음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일 만료일전에 이행청구할 수 있다.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2. 파산·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특약사항	보증처는 씨티그룹의 내부정책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에 의해 거래금지 국가로 지정된 지역("거래금지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어떠한 제재조치도 받지 않은 자 ("거래금지대상")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여야하며, 내국법인 및 개인에 한합니다. 만약 보증처가 거래금지지역에 있는 자 혹은 거래금지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당행은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수 보증처들 중, 청구는 이행 청구 접수 순으로 지급됩니다. 보증처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제6조가 규정하는 청구서류, 보증신청인(루이비통코리아)이 작성한 현금 환불 거절 확인서와 구매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를 직접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면 지급보증서 원본은 보증신청인으로부터 원본대조필(법인인감 날인)을 받은 지급보증서의 사본 제출로써 갈용할 수 있습니다. 구보증서(증서기번호 65242) 회수조건, 본 보증서의 효력 개시일로부터 구보증서(증서기번호 65242)는 효력이 소멸되며 구보증서에 대한 잔존채무도 본 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합니다.	
보증채무이행장		

청구금액 금 원

위 청구금액을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채권자 명칭 _____ (인)
주소 _____

년 월 일

<보증서 발급조회 안내>

*인터넷 : www.citibank.co.kr -> 기업고객 인터넷뱅킹(cat-i) -> 지급보증서 발급조회

(주)한국씨티은행



대한민국정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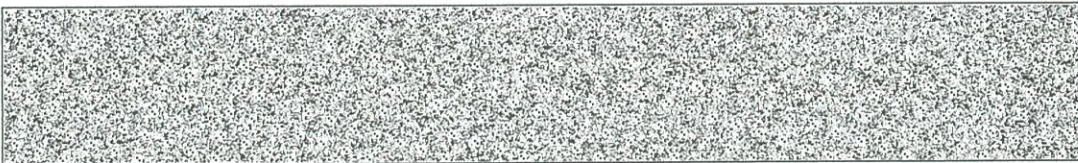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고 유 번 호 : 1902721-003147126
(Certificate No.)
수 입 인 지 금 액 : 10,000원
(Stamp Duty Amount)
성 명 (상 호) : 한국씨티은행
(N a m e)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1028114717
(Registration No.)
발 급 처 : 한국씨티은행
(Stamping Channel)
발 급 일 자 : 2019.01.08
(Certificate Issued Date)

기 획 재 정 부 장 관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copy)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

* 전자수입인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프린터 시험인쇄 요망), 제출서류 1건의 과세금액을 1매로 첨부(添附)하여 사용합니다.

< 전자적 소인 처리 방법 >

*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접수한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처리 절차는 gov.e-revenuestamp.kr에서 수행)

*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적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및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 방법 >

*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 환매(액면금액의 97%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및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